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3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위성곤·한병도·박정현

문대림 • 주철현 • 이개호

허 영 · 서영교 · 박희승

강유정 • 이건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

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하여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 하여야 있다. 한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4조 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 <신 설> 정법 시31조에 따라 예산요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 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 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 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신 설>

	प्पः	른 -	중앙	낭괸	서	별	지	출	한	도	산	·정
	시	포	함경	하지) (ŀι] 한	디	- <u>.</u>			
제	153	조¢	12(기	역시	구링	상	품	권		0]	용
	실E	태조	스사) (]) -							
	<u>3년</u>	마	다	실/	시	하고	1 _	1	결.	과-	를	공
	丑 5	하 o	야	हे	나다	<u>.</u> .						
	2	(현	현 행	과	같	음))					
	3	제.	1항	에	따	른	실	태	조/	사.	의	내
	용-	밎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시	항	<u>은</u>
	대분	통령	형령	<u>o</u>	己	정	한[구.				